

#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2. 1.

개정 2024. 2. 15.

개정 2025. 1. 2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장 시설 대관

**제2조(대관 시설)** 대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소모임 활동을 위한 8석 규모의 **동아리실1**(17.12㎡)
2. 소모임 활동을 위한 10석 규모의 **동아리실2**(25.23㎡)
3. 강연, 교육 등을 위한 30석 규모의 **세미나실**(75.65㎡)
4. 신체활동 및 소규모 음악활동을 위한 10명 활동 규모의 **마루실**(104.76㎡)
5. 강연, 발표회, 공연 등을 위한 100석 규모의 **다목적실**(258.38㎡)
6. 작품 전시를 위한 **어울림 전시홀**(76.38㎡)

**제3조(대관 시간)** ① 대관 시간은 회당 3시간 혹은 전일이며,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오전 : 09:30~12:30 | 3. 야간 : 18:00~21:00 |
| 2. 오후 : 14:00~17:00 | 4. 전일 : 09:00~18:00 |

②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.

**제4조(대관 신청)** ① 대관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제출, 센터장의 검토 및 승인, 사용료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.

② 대관 신청은 **분기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**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③ 대관 신청은 참여인원 2인 이상일 때 가능하다.

④ 모든 시설은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회차별 **월 5회까지** 이용 신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정기대관)** ① 일반 대관 신청은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두 번째 화요일부터 5일간 **분기별** 사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.

② 동아리 대관 신청은 동아리 활동 연간계획에 따라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5일간 **분기별** 사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.

③ 어울림 전시홀은 **사용일 기준 직전년도 11월** 모집공고를 통해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.

**제6조(수시대관)** 분기별 대관 신청 기간 이후 대관 신청이 없는 날의 경우 운영일 기준 이용 2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사용료 납부)** 사용료는 대관신청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이용자의 의무)** ① 시설 이용자는 ‘선량한 이용자의 의무’ 를 준수하며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센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없으며, 이용자의 소지물이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지가 제한될 수 있다.

### 제3장 생활문화 동아리

**제9조(생활문화 동아리 등록 등)** ①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동아리를 등록하여 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동아리 등록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.

③ 등록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대관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대관신청 절차와 사용료 등은 일반대관과 같다.

④ 센터는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(재능나눔 프로그램, 발표, 전시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생활문화 프로그램

**제10조(프로그램 운영)** 센터는 시민들의 취향을 발굴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과 내용, 주기를 달리하여 기획하며,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강사별 강의시간은 월 최대 2개 프로그램(4시간) 이내로 제한한다.

**제11조(프로그램 참여)** 센터가 기획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개강일 포함 2회 연속 무단결석 시 수강 취소되며 신청 대기자에게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.

**제12조(강사수당)** 강사수당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「김해시 당초예산 기준경비」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.

부칙

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